

의안번호	2217274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6.4.24.
추계번호	26D12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의무규정
2	안 제10조의2(전자서명요청 활동)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10조의2(전자서명요청 활동)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관련(안 제3조)

-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시 투표권자의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실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규 투표권자 진입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비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¹⁾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투표·개표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2020년부터 18세가 투표권자로 추가되었음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투표소 수는 총 14,259개소이며 2024년 기준 18세 인구수는 441,003명²⁾으로, 투표소당 18세 인구는 약 31명으로 추정됨. 이를 감안하면 주민소환투표권자로 18세 인구가 추가되더라도 투표소 수나 투·개표 관리 인력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18세 이상 인구의 장래추계를 고려할 때 주민소환투표에 18세 인구가 추가되더라도 향후 투표소 수나 투개표 관리 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1] 18세 인구 장래추계: 2024~2028년

(단위: 명)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8세	437,706	456,675	484,688	450,996	444,178

주: 위 자료는 2023년 12월에 통계청에서 공표(2023.7.1.기준)한 장래인구추계이며,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로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참고로, 2026년 현재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2026년에 주민소환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18세 투표권자수(18세 인구: 139,747명)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인 투표용지 인쇄비³⁾를 추정하면 아래와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주민투표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024년 기준, 통계청

3) 2024년 기준 투표용지 인쇄비 단가 43원 적용

같이 162만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⁴⁾

－ 주민소환투표 실시 추가재정소요

$$= \text{경기도 18세 인구} \times \text{투표용지 인쇄비 단가} \times \text{최근 2건 주민소환 평균 투표율} \\ = 139,747\text{명} \times 43\text{원} \times 27\% = 1,622,463\text{원}$$

[표 2] 2020년 이후 주민소환투표 실시 사례

지역	소환대상	투표일	투표율	결 과
경기도 과천시	시장	2021.6.30.	21.7%	소환무산(미개표)
강원도 양양군	군수	2025.2.26.	32.3%	소환무산(미개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

□ 전자서명 도입 관련(안 제10조의2)

-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1년 주민e직접 플랫폼을 구축⁵⁾하여 온라인 주민조례 및 주민투표 청구·처리, 전자서명 기능을 구축하였으며, 주민소환청구에 대하여도 전자서명 도입을 대비하여 전자서명 기능을 초기 구축하였음. 다만, 초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추후 시스템 세부사항 고도화 작업 등이 필요한 상황임
-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 세부사항 고도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워, 주민소환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주민e직접 플랫폼”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6년 예산에 6,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

4) 2007년 이후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총 153건, 이 중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2건이며, 2020년 이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2021년 경기도 과천시, 2025년 강원도 양양군 등 2건임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법규 서비스 고도화, 온라인 주민조례·주민투표 청구·처리 및 전자서명 기능을 구축하였으며,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40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